

의안번호	2219785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6.7.16.
추계번호	26E328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6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2년말까지 6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75억원, 2032년 95억원 등 2027~2032년 6년간 총 509억원(연평균 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2027~2032년 6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380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29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2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6년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3호)	-75	-79	-83	-87	-91	-95	-509	-85
- 부가가치세(74.7%)	-56	-59	-62	-65	-68	-71	-380	-63
- 지방소비세(25.3%)	-19	-20	-21	-22	-23	-24	-129	-2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3호	○ 농·어업 경영 및 농·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2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3호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최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실적 및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·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및 농어업법인 경영 개선 목적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¹⁾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
 - (위탁영농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재배 대행·축산물 사육 대행을 하는 법인의 활동(농작업의 100% 위탁)
 - (농작물대행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업의 일부(100% 미만)인 논밭 갈기, 작물심기, 농약뿌리기, 가지치기,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

1) 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「농업법인조사 보고서」(2023년 기준), 2025.5

□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은 2020년 1,814억원에서 2023년 2,094억원, 2024년 3,198억원으로 증가²⁾)

- 최근(2020~2023년)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4.9% 수준
 - 전년대비 증가율이 50%를 상회한 2024년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

[표 2]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²⁾ (2020~2023)
위탁영농·농작물대행 매출액 ¹⁾	1,814	1,518	2,000	2,094	3,198	4.9%
(전년대비 증감률)	-	(-16.3)	(31.8)	(4.7)	(52.7)	-

주: 1) 「농업법인조사」(농림축산식품부)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기준

2) 전년대비 증가율이 50%를 상회한 2024년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‘매출액 × 관련 부가가치율 × 부가가치세율(10%)’로 추계

- 추계기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은 최근 (2020~2023년)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추세(4.9%)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- 추계기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(20.31%)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한국은행 「기업경영분석」 상 ‘농업’[A01]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 적용

[표 3]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: 2022~2024년

(단위: %)

구분	2022	2023	2024	연평균
농업	20.49	18.96	21.49	20.31

자료: 한국은행,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면세사업자인 영농·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동 제도에 따르는 조세 지출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음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2년말까지 6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7년 75억원 등 2027~2032년 6년간 총 509억원(연평균 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380억원(연평균 63억원)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29억원(연평균 21억원) 감소 예상됨

[표 4]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: 2027~2032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전체	-75	-79	-83	-87	-91	-95	-509	-85
- 부가가치세(74.7%)	-56	-59	-62	-65	-68	-71	-380	-63
- 지방소비세(25.3%)	-19	-20	-21	-22	-23	-24	-129	-2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